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'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

1. 조직은행 갱신허가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고, 인체조직 이식 후 부작용 발생 시 환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및 양식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'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
2. 이에 상기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2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'26.12.14.(월)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(바이오의약품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식약처 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/행정예고 게시

3. 아울러,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'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.
2. 검토서 양식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본부(61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5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관련 협회

사무관	**박미영**	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	전결 2026. 11. 24. **오정원**

협조자

시행 바이오의약품정책과-7103 (2026.11.24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314 팩스번호 043-719-3300 / angcom7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